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의2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납입확인서

연금계좌 취급자	① 사업자등록번호	② 법인명(상호)	③ 대표자(성명)
	④ 법인(주민)등록번호	⑤ 소재지(주소)	
연금계좌 가입자	⑥ 성명	⑦ 주민등록번호	
	⑧ 주소	⑨ 계좌유형	⑩ 계좌번호

1.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

확인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
⑪ 연도	⑫ 납입액(영 제40의2제2항제1호)				⑬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 중 인출액	⑭ 순납입액 (⑫-⑬)	⑮ ⑬외 인출액	⑯ 영 제118조의3에 따른 전환 금액	⑰ 총납입액 (⑭-⑮)	⑱ 총납입액 누계
	가목	나목	다목	합계						

2.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명세

확인일	⑲ 사유	⑳ 확인처(계좌)	㉑ 확인금액	사유
				1.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2.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
합계				

㉒ 확인대상납입액(⑱-㉑)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연금계좌취급자 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1. ⑨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2. ⑪ ~ ⑯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
3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출액란(⑬란 또는 ⑮란)에 적지 않고 ⑫ 납입액란(다목란 및 합계란)에서 공제하여 적습니다.
4. ⑯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, 해당 금액은 ⑫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5. ⑲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(1 또는 2)하여 적습니다.
6. ⑳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(사유 중 "2"에 해당) 다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7. ㉒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